

의안번호	2208351
의 퇴 인	윤재옥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9.
추계번호	25C1034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 첫 해인 2026년에 총 1,737억 3백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노인여가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(안 제37조의4)	173,703	-	-	-	-	173,703	34,74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7조의4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	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하고(의무)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7조의4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(이하 ‘CCTV’)을 설치하는 여가복지시설에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2023년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을 때 보건복지부가 관련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개정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,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은 재량규정에 해당되므로, 실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 - 그러나 과거 2023년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을 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므로,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－ 2023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(개정 2021.12.) 개정법률이 시행되어,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1일까지 설치유예기간을 설정함과 동시에, 법 시행일 기준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(국비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)
- 지원 대상 시설 수 및 설치비 단가 가정
 - (지원 대상 시설 수) 2025년 말 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추정하고, 2023년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율([표 3] 참고)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 시설 수를 산출

- 2025년 말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2019~2023년의 해당 시설 수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산출

[표 2]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추이

						(단위: 개소, %)
지역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전국	68,413	69,005	68,823	69,786	70,455	0.7

주: 각 연도 말 기준 시설 수

자료: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각 연도 자료(해당 연도 말 기준 시설 수를 차년도에 공표)

- (설치비 단가) 2023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 규모 및 실집행액을 고려하여 개소당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
 - 추계기간까지 개소당 지원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2023년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현황 등

2023년 장기요양기관(노인의료시설) 지원 현황			2023년 전체 노인의료시설 수 (D, 개소)	지원율 (C/D, %)	지원단가 (B/C, 천원)
보건복지부 실집행액 (A, 백만원)	국비·지방비 합산 (B=A*2, 백만원)	지원 대상 시설 수 (C, 개소)			
7,373	14,745	5,389	6,069	88.8	2,736

주: 국비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이므로 국비·지방비 합산액은 보건복지부 실집행액의 2배로 추산
(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)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

- 추계결과,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 첫 해인 2026년에 총 1,737억 3백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노인여가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지원 대상 기관 수(A, 개소)	63,488	-	-	-	-	-	-
지원 단가(B, 천원)	2,736	-	-	-	-	-	-
추가재정소요(A×B, 백만원)	173,703	-	-	-	-	173,703	34,74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